

발 간 등 록 번 호

11-1541000-001462-14

www.mifaff.go.kr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이행점검 사례집

2012. 9

목 차



I. 사업개요	1
II. 대상농지 및 대상자, 기관별 담당업무	5
III.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이행점검	15
IV. 이행점검 유형별 사례 판단기준	23

I

사업개요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I 사업개요

1. 목 적

-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농업인 등에게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등을 통해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
- 특히, DDA/쌀협상 이후 시장개방 확대 등으로 인하여 쌀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 쌀 생산 농가의 소득 보전하기 위함

2. 근거법령

-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3. 성과목표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고정직접지불금, 변동직접지불금)을 지원하여 쌀 생산농가의 실질수입을 정부가 정한 목표가격(170,083원/쌀80kg)의 97.5% 이상 유지

Ⅱ

대상농지 및 대상자, 기관별 담당업무

II

대상농지 및 대상자, 기관별 담당업무

1. 지급대상 농지(법 제5조)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는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재배에 한함)에 이용된 농지(「농지법」에 따른 농지)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는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벼, 연근, 미나리, 왕골재배에 이용된 농지’로서 현재는 ‘벼·연근·미나리·왕골 그 밖에 농업인 등이 소득증대를 위하여 경작하는 농작물’ 또는 ‘농업인 등이 재배하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농지(휴경 포함)임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① 「하천법」 제2조에 따른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

※ 다만, 2005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의 기간 중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로서 등록신청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보상받지 않은 농지분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1년 이상 논농업에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으로 인정

② 「농지법」 제34조·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와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농지전용허가·신고·협약이 의제(擬制)되는 경우 포함)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를 타 용도로 일시사용허가를 받은 농지는 등록 신청하는 연도에 사용허가가 종료되고, 농지로 원상복구하여 당해 연도에 논 농업에 이용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대상 농지로 인정

- ③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의 농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의 농지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의 농지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의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농지
 - ※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위의 각목에 따른 지구·지역의 농지 중 보상을 받지 아니한 농지분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1년 이상 논농업에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
 - ※ 등록신청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보상금 중 일부를 받은 농지분에 대해서는 등록신청 연도에 논농업에 이용하도록 사업 시행자와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지급대상 농지로 인정할 수 있음
- ④ 법 제13조제1항 제1호(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한 농지(등록제한기간은 5년 이내)

**나. 다만, 1997년 12월 31일 이전 논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쌀소득등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임**

- ① 경지정리사업, 간척사업 등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인하여 1998년 1월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논농업이 중단된 경우
 - ② 태풍이나 홍수 등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연재해, 풍수해로 인하여 1998년1월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
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논농업이 중단된 경우
- ※ 1년 동안 정상적인 방법으로 벼를 파종·수확하였다면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로 볼 수 있음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지급상한 면적

- 농업인은 30만제곱미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
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은
50만제곱미터

2. 지급 대상자

쌀소득등직접지불금의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는 자는 법 제5조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 농업에 종사**(휴경 포함)하는 농업인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 논농업에 종사 :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논 농업에 필요한 농작업을 직접수행(농작업의 일부만 위탁하는 경우 포함) 하는 것을 말함
- 일부 위탁의 범위 :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논 농업에 필요한 농작업 중 일부를 직접 수행하고, 그 결과물인 농산물이 본인에게 최종 귀속하는 경우를 말함

가.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농업인,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업농업인**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전업농육성 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
- ②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법 제5조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2년 이상 연속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농업인**등(휴경하는 경우 면적산정에서 제외)
 - ㉠ 농업인 : 1만제곱미터 이상 경작하거나 농산물의 판매금액이 9백만원 이상
 - ㉡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 5만제곱미터 이상 경작하거나 농산물의 판매금액이 4천5백만원 이상

- ③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에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수령한 사람이 사망(「장기등이식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뇌사판정을 받은 경우를 포함)하여 해당농지에서 논농업에 계속 종사(휴경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서 사망한 사람과 사망 직전 2년 이상 주소를 같이 한(사망하기 전에 치료를 목적으로 그 사망한 사람의 주소가 이전되어 주소가 같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기간을 포함) 농업인
- 다만,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연도부터 지급대상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등록하는 연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에 주소를 두는 농업인
-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두고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른 농업을 주업(主業)으로 하는 농업인
- ④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1년 이상 논농업에 종사한 자로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9조 또는 제24조의4에 따라 임대 또는 위탁하였던 농지를 회수하여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
- 이 경우 등록신청하는 연도에 지급대상 농지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농업인등이어야 한다.(휴경하는 경우 면적산정에서 제외)

- ㉔ 농업인 : 1만제곱미터 이상 경작하거나 농산물의 판매금액이 9백만원 이상
- ㉕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 5만제곱미터 이상 경작하거나 농산물의 판매금액이 4천5백만원 이상

나. 2005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 다만 “나”에 해당자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의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함

* 주소 기준 : 등록신청 당시 기준으로 하며, 등록증 발급 시에 주소지를 재확인

- ① 같은 시·군·구에 소재하는 1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과, 같은 시·군·구에 소재하는 5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 회사법인

* ‘같은 시·군·구’의 의미 : 쌀직불금을 신청하는 사람의 주소지에 관계없이 어느 한 시·군·구에 1만㎡ 이상 경작해야 한다는 의미임, 예를 들어 과천시에 주소를 둔 자가 화성시에 있는 농지 1만㎡ 이상 경작한다면 지급대상이고, 화성시 6천㎡, 평택시에 5천㎡를 경작하는 경우에는 지급 대상이 아님

- ②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9백만원** 이상인 농업인과 **4천5백만원** 이상인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 ③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 신청 연도의 직전 2년 이상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해당 시·구에 두고, 해당 시·구에 소재한 1천제곱미터 이상의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신청인의 주소지 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 중 연접한 읍·면·동 내의 농지 포함)를 직전 2년 이상 경작한 자
- * 해당 시·구 : 등록신청 당시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시·구를 말함
 - * 2년 경작기간 : 벼농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1년에 2개월 이내) 내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주소를 다른 곳으로 일시적으로 옮겼다가 다시 원래의 주소지로 이사 온 경우에는 예외 인정할 수 있음
 - * 연접한 읍·면·동 : 지방자치법 제4조의2 규정에 의한 행정면, 행정동

다.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쌀소득등직접지불금의 지급 대상자가 될 수 없음, 다만 아래 ③과 ④번의 경우에는 해당하는 농지분에 대하여만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음

- ①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 신청 전년도를 기준으로 **3천7백만원** 이상인 자
- ②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자**
 - * 휴경으로 신청한 면적을 제외하고, 논농업에 이용(경작)하는 농지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면적계산시 타 시·군·구에 등록신청한 면적은 포함)
- ③ 「농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해당하는 농지분)
- ④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해당하는 농지분)
- ⑤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쌀소득등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3. 기관별 담당업무

구 분	담 당 업 무
지 자 체 (시·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농업에 이용가능 여부의 인정 ○ 법 제7조에 따른 쌀직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 및 등록증 발급 ○ 법 제8조에 따른 쌀직불금 지급대상자의 변경등록 및 지급 대상 농지의 양수(讓受)·임차·사용차(使用借)에 관한 신고 수리 ○ 법 제9조에 따른 고정직불금의 지급 ○ 법 제11조에 따른 변동직불금의 지급 ○ 법 제12조제2항에 토양성분 검사 ○ 법 제13조에 따른 쌀직불금 일부 또는 전부의 지급금지 및 등록 제한 ○ 법 제13조의2에 따른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징수 ○ 법 제26조에 따른 쌀직불금 신청자·수령자의 정보공개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조사·통보 ○ 법 제28조에 따른 신고의 처리 및 신고 포상금의 지급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농약잔류 검사
한국농어촌 공 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등에 대한 현지확인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의 유지 및 관리 • 이웃농지와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의 설치 및 관리 • 농지주변 용·배수로 유지 및 관리 • 이웃농지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잡초 제거 - 물을 가두어 벼를 재배했는지 여부 확인

Ⅲ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이행점검

1. 이행점검 근거

-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제27조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의거 이행점검 실시

2. 이행점검 사항

- 고정직접지불금 조건
 -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 유지 및 관리 여부
 - 이웃농지와의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 설치 및 관리 여부
 - 농지주변의 용·배수로 유지 및 관리 여부
 - 이웃농지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잡초 제거 여부
- 변동직접지불금 조건
 - 물을 가두어 벼를 재배했는지의 여부

3. 이행점검 원칙

-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능동적으로 반드시 현장 확인에 의한 정확한 조사 실시
 - 이행점검은 공사에 권한과 책임이 있으므로 점검 결과에 대한 책임은 조사자와 관련자에게 있음

4. 점검대상 농지

시·군·구의 Agrix시스템에서 등록증 발급 농지(필지)

대상 농지의 여부 판단은 지자체의 소관 사항이므로 등록된 농지는 반드시 현장 확인 조사하고 한 필지도 누락 되어서는 아니 됨

* ID를 부여받은 지사담당자는 해당 시·군·구 등록증 발급 농지 전체 출력
→ 관할지역 밖의 농지는 관할 지사에 송부 → 관할 지사에서는 대상농지 조사 → 조사결과는 통보한 지사에 송부 → 조사결과 전산입력 및 확정

5. 점검기간 : 등록증 발급 후 ~ 2개월간

6. 점검방법

지사 이행점검조사 담당자는 농지정보현장조사시스템에서 지적도면 등을 출력 점검

필요시 농지의 지적도 등을 시·군·구 또는 읍·면·동으로부터 확보 하여 점검

* 시·군·구(읍·면·동) : 필지별 내역, 지적도면 및 관련자료 등 제공

중점조사지역을 지정하고 현장 확인 조사

○ 공사 관리구역 밖 농지

○ 작년도 불이행 농지와 변동농가

○ 대상농지에서 벼 이외의 타 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하는 경우

* 특히 동일 필지의 농지에 2명 이상이 공동경작으로 등록신청한 경우에는 경계의 설치 및 관리, 농지주변 용·배수로 유지 및 관리 등은 집중적으로 점검

- 의무 불이행사례 확인 시에는 신청자로부터 확인서를 징구하되, 신청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증빙서류(사진 및 조사자 소견서)를 작성 비치함

※ 현재 물을 가두어 벼를 재배하지 않은 경우에는 담수 능력이 없어도 고정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의

7. 점검결과 입력 : 점검결과는 AgriX시스템에 입력

- 점검결과를 항목별로 입력한 후, 결재를 받아 확정 및 전송
- 입력 결과를 출력하여 도본부에 보고, 도본부는 취합하여 본사에 보고(사업시행지침 별지 제12호 서식)

8. 점검결과에 대한 수정

- 공사의 점검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농지에 대해서는 시·군·구청장(읍·면·동장)이 AgriX시스템에서 재조사 요청
- 재조사 요청 농지에 대해 재조사 하고, 그 결과를 수정 입력후 확정
 - *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점검결과에 대한 책임은 공사에 있음

<참고사항>

- 농업인 등(『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농업인(『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 하는 사람
-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 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

□ 지급제한기준

- 법 제2조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9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4조의4 제1호
- 법 제13조제1항제4호, 동법 시행규칙 제7조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지급제한기준
<p style="text-align: center;"><고정직불금 지급요건 미준수 경우></p> <p>1)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관리</p>		해당 농지의 고정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p>2)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p> <p>가) 이웃농지와의 경계 설치 및 관리</p> <p>나) 용·배수로 유지 및 관리</p> <p>다) 이웃 농지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잡초 제거</p>	법 제13조 제1항 제4호	해당 농지의 고정직접지불금 1/2 감액
<p>3) 2)가)부터 다)까지 중 2개 이상을 위반한 경우</p>		해당 농지의 고정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5.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중 이행점검 관련 조문

○ 법 제2조제2호

- “논농업”이란 지목(地目)과 상관없이 논으로 이용되는 농지에서 벼, 연근, 미나리, 왕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물을 재배하는 농업을 말한다.

<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물”이란 농업인등이 소득증대를 위하여 경작하는 농작물 또는 농업인등이 재배하는 다년성 식물을 말한다.

○ 법 제2조제4호및제5호

- “고정직접지불금”이란 농작물의 생산량 및 가격의 변동과 상관없이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 “변동직접지불금”이란 논농업으로 이용되는 농지에서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등에게 해당 연도에 생산한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이 목표가격에 미달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 법 제6조제1항

-(휴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법 제9조제1항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쌀소득등직불금 등록자에게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유지하고 있는 농지분에 대하여만 고정 직접지불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동법 시행령 제4조의4 >

1.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의 유지·관리할 것

2. 이웃 농지와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할 것
3. 농지 주변의 용수로·배수로를 유지·관리할 것
4. 이웃 농지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잡초를 제거 할 것

○ **법 제11조제1항제1호**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하고
 쌀을 생산할 것

< 동법 시행령 제6조의2 >

- 시행령 제4조의4에 따른 기준을 갖춘 농지에 물을 가두는 방법으로
 쌀을 생산 하여야한다

○ **법 제13조제1항제4호(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감액지급 또는
 등록제한)**

4. 법 제9조1항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급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 동법 시행규칙 제7조(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등록
 제한 기준) >

IV

이행점검 유형별 사례 판단기준

1.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 유지 및 관리 25
2. 이웃농지와 구분 가능하도록 경계 설치 및 관리 45
3. 농지 주변의 용·배수로 유지 및 관리 57
4. 이웃농지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잡초 제거 69
5. 물을 가두어 벼를 재배했는지 여부 79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 유지 및 관리

1. 환경유해물질·건축 폐기물 등이 적치되어 있는 농지 27
2. 모래·자갈 등이 적치되어 있는 농지 27
3. 농지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시설하우스(유리온실 등) 설치 28
4. 골재채취장, 양어장 등 타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농지 28
5. 축사, 돈사, 양계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농지 29
6. 창고, 주유소 등 건축물부지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농지 29
7. 수령농지로서 농작물 재배가 불가능한 경우 30
8. 정지작업 등 농지관리를 하지 않고 방치되어 농지로서 기능이 상실된 경우 30
9. 오수관로 설치가 미비 된 지역의 생활오폐수 유입 상태 31
10. 일시적으로 매립하여 임시주차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농지 31
11. 농경지 리모델링 工事가 진행 중에 있는 농지 32
12. 조경수, 관목수, 묘목 등이 식재되어 있는 농지 32
13. 신청 농지에 컨테이너 등을 설치하여 현장사무소로 사용하고 있는 농지 ... 33
14. 신청 농지가 홍수로 인하여 유실된 농지의 경우 33
15. 일부는 밭작물, 일부는 휴경인 농지의 경우 34
16. 매립하지 않은 상태의 농지가 주차시설인지 휴경인지 애매한 경우 34
17. 매립 및 성토 후 방치하여 농지로서 구분이 어려운 상태의 농지 35
18. 논에 복토를 하여 담수능력은 없어도 밭작물 식재가 가능한 농지 35
19. 간이집하장이 설치된 농지 36
20. 휴경으로 신청하고 해당 농지에 건축자재가 적치되어 있는 경우 36

21.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의 유지 및 관리 중 일부 불이행인 경우	37
22. 논외의 형상이 유지되면서 대형 나무가 존재하는 상태의 적용 여부	37
23. 한 필지에 일정부분만 농작물이 재배되고 있는 상태	38
24. 잡초, 나무 등이 무성하게 자라 농지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앞으로도 농작물 생산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38
25. 인접 토지를 담수호로 사용	39
26. 하우스안의 조사시점에 휴경인 경우 (봄이나, 조사시점이전에 경작을 했다고 말하는 경우)	39
27. 농촌고령화 및 농지관리 소홀로 인한 토지기능상실(방치된 토지)로 그 판단 기준이 애매한 상태	40
28. 도로 등 공공사업 편입으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농지의 경우	40
29. 농지의 일부를 간이농막으로 이용하고 있는 농지	41
30. 농지에 시설하우스(연동)를 설치하여 사실상 담수 능력을 상실하고 있는 오지	41
31. 농지가 산지와 연결하여 농지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42
32. 특용작물 재배단지 하우스 시설물 설치면적 산정시 민원발생 우려	42
33. 동일필지에 일부 경작 및 휴경면적 산정시 민원발생 우려	43
34. 신청필지에 객토작업으로 현 상태를 구별하기 어려운 상태	43
35. 논외의 형상은 유지되고 있으나 잡종지로 방치되어 사실상 벼농사가 곤란한 경우	44
36. 과수목을 일정간격마다 식재하고 그 사이에 타작물을 심은 상태	44

1	사례	환경유해물질·건축 폐기물 등이 적치되어 있는 농지	
유형별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의 유지 및 관리	관련 직불금	
		고정·변동직불금	

판단기준

- ☒ 고정직접지불금은 농작물의 생산량 및 가격 변동과 상관없이 논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에게 지급하는 직접지불금임
- ☒ 고정직접지불금은 법으로 4가지 지급요건을 정하고 있는 바, 환경유해물질·건축 폐기물 등이 적치되어 있는 농지는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의 유지 및 관리 요건을 갖추지 않았으므로 불이행으로 판단하고 사진 및 불이행확인서 등 증빙자료 비치
다만, 적치물을 정리하고 그 위에 복토를 하여 농작물 생산이 가능하도록 관리를 하고 있다면 이행으로 판단

2	사례	모래·자갈 등이 적치되어 있는 농지	
유형별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의 유지 및 관리	관련 직불금	
		고정·변동직불금	

판단기준

- ☒ 고정직접지불금은 농작물의 생산량 및 가격 변동과 상관없이 논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에게 지급하는 직접지불금임
- ☒ 고정직접지불금은 법으로 4가지 지급요건을 정하고 있는 바, 모래·자갈 등이 적치되어 있는 농지는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의 유지 및 관리 요건을 갖추지 않았으므로 불이행으로 판단하고 사진 및 불이행확인서 등 증빙자료 비치

3	사례	농지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시설하우스(유리온실 등) 설치	
유형별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의 유지 및 관리	관련 직불금	
		고정·변동직불금	

판단기준

- ☒ 고정직접지불금은 농작물의 생산량 및 가격 변동과 상관없이 논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에게 지급하는 직접지불금임
- ☒ 고정직접지불금은 법으로 4가지 지급요건을 정하고 있는 바, 콘크리트 타설 등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시설하우스 등을 설치한 경우는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의 유지 및 관리 요건을 갖추지 않았으므로 불이행으로 판단하고 사진 및 불이행확인서 등 증빙자료 비치
다만,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지 않고 농지위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육묘 재배 및 농작물을 재배할 경우는 이행으로 판단

4	사례	골재채취장, 양어장 등 타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농지	
유형별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의 유지 및 관리	관련 직불금	
		고정·변동직불금	

판단기준

- ☒ 고정직접지불금은 농작물의 생산량 및 가격 변동과 상관없이 논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에게 지급하는 직접지불금임
- ☒ 고정직접지불금은 법으로 4가지 지급요건을 정하고 있는 바, 골재채취장, 양어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농지는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의 유지 및 관리 요건을 갖추지 않았으므로 불이행으로 판단하고 사진 및 불이행확인서 등 증빙자료 비치
다만, 농지의 형상을 유지하면서 친환경농법으로 우렁이, 오리 등을 양식하는 경우에는 이행으로 판단

5	사례	축사, 돈사, 양계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농지	
유형별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의 유지 및 관리	관련 직불금	
		고정·변동직불금	

판단기준

- ☒ 고정직접지불금은 농작물의 생산량 및 가격 변동과 상관없이 논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에게 지급하는 직접지불금임
- ☒ 고정직접지불금은 법으로 4가지 지급요건을 정하고 있는 바, 축사, 돈사, 양계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농지는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의 유지 및 관리 요건을 갖추지 않았으므로 불이행으로 판단하고 사진 및 불이행확인서 등 증빙자료 비치

6	사례	창고, 주유소 등 건축물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농지	
유형별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의 유지 및 관리	관련 직불금	
		고정·변동직불금	

판단기준

- ☒ 고정직접지불금은 농작물의 생산량 및 가격 변동과 상관없이 논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에게 지급하는 직접지불금임
- ☒ 고정직접지불금은 법으로 4가지 지급요건을 정하고 있는 바, 창고, 주유소 등 건축물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농지는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의 유지 및 관리 요건을 갖추지 않았으므로 불이행으로 판단하고 사진 및 불이행확인서 등 증빙자료 비치

7	사례	수령농지로서 농작물 재배가 불가능한 경우	
유형별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의 유지 및 관리	관련 직불금	
		고정·변동직불금	

판단기준

- ☒ 고정직접지불금은 농작물의 생산량 및 가격 변동과 상관없이 논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에게 지급하는 직접지불금임
- ☒ 고정직접지불금은 법으로 4가지 지급요건을 정하고 있는 바, 수령농지로서 농작물 생산이 불가능한 경우는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의 유지 및 관리 요건을 갖추지 않았으므로 **불이행으로 판단**하고 사진 및 불이행확인서 등 증빙자료 비치
 다만 수령농지에 생산을 목적으로 미나리, 연근, 왕골 등 농작물을 식재하여 관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행으로 판단**

8	사례	정지작업 등 농지관리를 하지 않고 방치되어 농지로서 기능이 상실된 경우	
유형별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의 유지 및 관리	관련 직불금	
		고정·변동직불금	

판단기준

- ☒ 고정직접지불금은 농작물의 생산량 및 가격 변동과 상관없이 논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에게 지급하는 직접지불금임
- ☒ 고정직접지불금은 법으로 4가지 지급요건을 정하고 있는 바, 정지작업 등 농지관리를 하지 않아 잡목이 우거져 있는 등 사실상 농지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로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의 유지 및 관리 요건을 갖추지 않았으므로 **불이행으로 판단**하고 사진 및 불이행확인서 등 증빙자료 비치

9	사례	오수관로 설치가 미비 된 지역의 생활오폐수 등 유입 상태	
유형별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의 유지 및 관리	관련 직불금	
		고정·변동직불금	

판단기준

- ☒ 고정직접지불금은 농작물의 생산량 및 가격 변동과 상관없이 논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에게 지급하는 직접지불금임
- ☒ 고정직접지불금은 법으로 4가지 지급요건을 정하고 있는 바, 생활오폐수, 공장오폐수 등이 유입되어 농작물의 생산이 불가능한 상태의 농지는 불이행으로 판단하고 사진 및 불이행확인서 등 증빙자료 비치

10	사례	일시적으로 매립하여 임시주차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농지	
유형별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의 유지 및 관리	관련 직불금	
		고정·변동직불금	

판단기준

- ☒ 고정직접지불금은 농작물의 생산량 및 가격 변동과 상관없이 논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에게 지급하는 직접지불금임
- ☒ 고정직접지불금은 법으로 4가지 지급요건을 정하고 있는 바, 일시매립 하여 임시주차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농지는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 하도록 토양의 유지 및 관리 요건을 갖추지 않았으므로 불이행으로 판단하고 사진 및 불이행확인서 등 증빙자료 비치

11 사례	농경지 리모델링 工事가 진행 중에 있는 농지	
유 형 별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의 유지 및 관리	관련 직불금
		고정·변동직불금

판단기준

- ☒ 고정직접지불금은 농작물의 생산량 및 가격 변동과 상관없이 논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에게 지급하는 직접지불금임
- ☒ 고정직접지불금은 법으로 4가지 지급요건을 정하고 있는 바, 농경지 리모델링 工事가 진행 중에 있는 농지는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의 유지 및 관리 요건을 갖추지 않았으므로 불이행으로 판단하고 사진 및 불이행 확인서 등 증빙자료 비치

12 사례	조경수, 관목수, 묘목 등이 식재되어 있는 농지	
유 형 별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의 유지 및 관리	관련 직불금
		고정·변동직불금

판단기준

- ☒ 고정직접지불금은 농작물의 생산량 및 가격 변동과 상관없이 논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에게 지급하는 직접지불금임
- ☒ 고정직접지불금은 법으로 4가지 지급요건을 정하고 있는 바, 농업인 등이 소득증대를 위하여 경작하는 농작물 또는 농업인 등이 재배하는 다년생 식물 재배에 이용되는 농지는 지급대상 농지이므로 판매를 목적으로 조경수, 관목수, 묘목 등이 식재 된 경우에는 이행으로 판단하고 다만, 정원수를 식재하여 정원부지로 사용시에는 불이행으로 판단

13	사례	신청 농지에 현장사무소 컨테이너가 놓여 있는 상태	
유 형 별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의 유지 및 관리	관련 직불금	
		고정·변동직불금	

판단기준

- ☒ 고정직접지불금은 농작물의 생산량 및 가격 변동과 상관없이 논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에게 지급하는 직접지불금임
- ☒ 고정직접지불금은 법으로 4가지 지급요건을 정하고 있는 바, 신청 농지에 컨테이너를 놓고 현장사무소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불이행으로 판단하고 사진 및 불이행확인서 등 증빙자료 비치
다만, 컨테이너를 치우고 현장사무소 사용이 마무리 된 후 농지로 원상회복이 된 경우에는 이행으로 판단

14	사례	신청 농지가 홍수로 인하여 유실된 농지의 경우	
유 형 별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의 유지 및 관리	관련 직불금	
		고정·변동직불금	

판단기준

- ☒ 고정직접지불금은 농작물의 생산량 및 가격 변동과 상관없이 논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에게 지급하는 직접지불금임
- ☒ 고정직접지불금은 법으로 4가지 지급요건을 정하고 있는 바, 홍수로 인하여 유실된 경우로 조사년도에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불이행으로 판단하고 사진 및 불이행확인서 등 증빙자료 비치
다만, 복구를 하고 복구 당해 연도에 경작이 불가능하여 농작물 재배를 하지 않았을 경우(휴경)는 이행으로 판단

15	사례	일부는 밭작물, 일부는 휴경인 농지의 경우	
유형별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의 유지 및 관리	관련 직불금	
		변동직접지불금	

판단기준

- ☒ 고정직접지불금은 농작물의 생산량 및 가격 변동과 상관없이 논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에게 지급하는 직접지불금임
- ☒ 고정직접지불금은 법으로 4가지 지급요건을 정하고 있는 바, 대상농지에 재배 작물이 벼이외 타작물을 식재하거나 휴경을 할 경우에도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가 되고 있으면 **이행으로 판단**

16	사례	매립하지 않은 상태의 농지가 주차시설인지 휴경인지 애매한 경우	
유형별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의 유지 및 관리	관련 직불금	
		변동직접지불금	

판단기준

- ☒ 고정직접지불금은 농작물의 생산량 및 가격 변동과 상관없이 논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에게 지급하는 직접지불금임
- ☒ 고정직접지불금은 법으로 4가지 지급요건을 정하고 있는 바, 대상농지가 휴경인 경우에도 직불금을 지급하므로 주차시설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매립한 상태가 아니고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를 하고 휴경 농지에 일부 주차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이행으로 판단**

17	사례	매립 및 성토 후 농작물을 식재하지 않고 방치하여 농지 구분이 어려운 상태	
유형별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의 유지 및 관리	관련 직불금	
		고정·변동직불금	

판단기준

- ☒ 고정직접지불금은 농작물의 생산량 및 가격 변동과 상관없이 논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에게 지급하는 직접지불금임
- ☒ 고정직접지불금은 법으로 4가지 지급요건을 정하고 있는 바, 대상농지에 매립 및 성토 후 농작물을 식재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로 휴경 농지 상태가 아닌 경우는 불이행으로 판단하고 사진 및 불이행확인서 등 증빙자료 비치

18	사례	논에 복토를 하여 담수능력은 없어도 밭작물 식재가 가능한 농지	
유형별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의 유지 및 관리	관련 직불금	
		변동직접지불금	

판단기준

- ☒ 고정직접지불금은 농작물의 생산량 및 가격 변동과 상관없이 논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에게 지급하는 직접지불금임
- ☒ 고정직접지불금은 법으로 4가지 지급요건을 정하고 있는 바, 휴경하고 있는 농지의 경우도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대상농지에 복토를 하고 담수능력은 없어도 밭작물 식재가 가능한 농지는 이행으로 판단

19	사례	현재는 농작물 생산이 되지 않고 있으나, 향후에는 생산이 가능한 간이집하장 등이 설치된 농지	
유형별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의 유지 및 관리	관련 직불금	
		고정·변동직불금	

판단기준

- ☒ 고정직접지불금은 농작물의 생산량 및 가격 변동과 상관없이 논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에게 지급하는 직접지불금임
- ☒ 고정직접지불금은 법으로 4가지 지급요건을 정하고 있는 바, 현재는 농작물 생산이 되지 않고 있으나, 향후에는 생산이 가능한 간이집하장 등이 설치된 농지의 경우는 조사 시점에 간이집하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불이행으로 판단하고 사진 및 불이행확인서 등 증빙자료 비치

20	사례	휴경으로 신청하고 해당 농지에 건축자재가 적재되어 있는 경우	
유형별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의 유지 및 관리	관련 직불금	
		고정·변동직불금	

판단기준

- ☒ 고정직접지불금은 농작물의 생산량 및 가격 변동과 상관없이 논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에게 지급하는 직접지불금임
- ☒ 고정직접지불금은 법으로 4가지 지급요건을 정하고 있는 바, 휴경으로 신청한 농지에 건축자재가 적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불이행으로 판단하고 사진 및 불이행확인서 등 증빙자료 비치

21	사례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의 유지 및 관리 요건 중 일부 불이행인 경우	
유형별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의 유지 및 관리	관련 직불금	
		고정·변동직불금	

판단기준

- ☒ 고정직접지불금은 농작물의 생산량 및 가격 변동과 상관없이 논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에게 지급하는 직접지불금임
- ☒ 고정직접지불금은 법으로 4가지 지급요건을 정하고 있는 바,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의 유지 및 관리 요건 중 일부 불이행인 경우는 **이행으로 판단**하고 일부 불이행부분만 면적 등을 Agrix에 입력

22	사례	논의 형상이 유지되면서 대형 나무가 존재하는 상태의 적용 여부	
유형별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의 유지 및 관리	관련 직불금	
		고정·변동직불금	

판단기준

- ☒ 고정직접지불금은 농작물의 생산량 및 가격 변동과 상관없이 논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에게 지급하는 직접지불금임
- ☒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경작하는 농작물 또는 농업인 등이 재배하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농지는 지급대상 농지이므로 대형나무가 판매목적 등으로 식재되어 농가소득 증대에 직접 기여할 수 있다면 **이행으로 판단**하나 다만 대형나무가 농가소득 증대에 관련이 없거나 주변 작물에 피해만 준다면 대형나무와 그 부지부분은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지 아니하므로 **불이행으로 판단**

23 사례	한 필지에 일정부분만 농작물이 재배되고 있는 상태	
유형별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의 유지 및 관리	관련 직불금
		고정·변동직불금

판단기준

- ☑ 고정직접지불금은 농작물의 생산량 및 가격 변동과 상관없이 논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에게 지급하는 직접지불금임
- ☑ 농지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한다면 한 필지에 일정부분만 농작물을 재배하고 나머지 일부를 휴경하였거나 타작물을 재배하였어도 **이행으로 처리**하여 고정직불금 지급가능함. 단, 논농업에 이용하지 않았을 경우 변동직불금 지급 불가

24 사례	잡초, 나무 등이 무성하게 자라 농지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앞으로도 농작물 생산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유형별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의 유지 및 관리	관련 직불금
		고정·변동직불금

판단기준

- ☑ 고정직접지불금은 농작물의 생산량 및 가격 변동과 상관없이 논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에게 지급하는 직접지불금임
- ☑ 이행요건에서 농지는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지를 유지하고 관리하여야 하므로 농지가 전혀 관리되지 않고 앞으로도 농작물의 생산이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불이행으로 판단**

25	사례	인접 토지를 담수호로사용	
유형별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의 유지 및 관리	관련 직불금	
		고정·변동직불금	

판단기준

- ☒ 고정직접지불금은 농작물의 생산량 및 가격 변동과 상관없이 논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에게 지급하는 직접지불금임
- ☒ 농지에서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지를 유지·관리되고 있으면 이행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비록 인접 토지가 담수호로 사용되고 있다 할지라도 당해농지에서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행으로 판단**

26	사례	하우스안의 조사시점에 휴경인 경우(봄이나, 조사시점 이전에 경작을 했다고 말하는 경우)	
유형별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의 유지 및 관리	관련 직불금	
		고정·변동직불금	

판단기준

- ☒ 고정직접지불금은 농작물의 생산량 및 가격 변동과 상관없이 논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에게 지급하는 직접지불금임
- ☒ 농지에서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지를 유지·관리되고 있으면 이행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으며 휴경인 경우에도 지급요건에 해당하므로 휴경인 경우 **이행으로 판단**

27	사례	휴경농촌고령화 및 농지관리 소홀로 인한 토지기능상실 (방치된 토지)로 그 판단 기준이 애매한 상태	
유형별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의 유지 및 관리	관련 직불금	
		고정·변동직불금	

판단기준

- ▣ 고정직접지불금은 농작물의 생산량 및 가격 변동과 상관없이 논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에게 지급하는 직접지불금임
- ▣ 이행요건으로 농지에서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지를 유지·관리되고 있을 경우이므로 고령으로 인한 농지관리 소홀로 토지의 기능이 상실되어 농작물 생산이 불가능한 상태로 관리되고 있는 때에는 불이행으로 판단 다만, 휴경의 경우에는 이행으로 판단

28	사례	도로 등 공공사업 편입으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농지의 경우	
유형별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의 유지 및 관리	관련 직불금	
		고정·변동직불금	

판단기준

- ▣ 고정직접지불금은 농작물의 생산량 및 가격 변동과 상관없이 논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에게 지급하는 직접지불금임
- ▣ 이행요건으로 농지에서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지를 유지·관리되고 있을 경우이므로 논에 도로공사가 진행중으로 이로 인하여 농작물 생산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불이행으로 판단 다만 공사가 진행되지 않아 농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이행으로 판단

29	사례	농지의 일부를 간이농막으로 이용하고 있는 농지	
유형별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의 유지 및 관리	관련 직불금	
		고정·변동직불금	

판단기준

- ☒ 고정직접지불금은 농작물의 생산량 및 가격 변동과 상관없이 논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에게 지급하는 직접지불금임
- ☒ 이행요건으로 농지에서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지를 유지·관리되고 있을 경우이므로 논에 간이농막을 설치하므로 인하여 농작물 생산이 불가능한 부분은 불이행으로 판단

30	사례	농지에 시설하우스(연동)를 설치하여 사실상 담수 능력을 상실하고 있는 오지	
유형별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의 유지 및 관리	관련 직불금	
		고정·변동직불금	

판단기준

- ☒ 고정직접지불금은 농작물의 생산량 및 가격 변동과 상관없이 논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에게 지급하는 직접지불금임
- ☒ 농지에 시설하우스(연동)를 설치하여 사실상 담수 능력이 없다 하여도 농지의 바닥에 콘크리트를 설치 하지 않아 밭작물 식재가 가능한 상태일 경우에는 농작물 생산이 가능하므로 이행으로 처리하여 고정직불금 지급 가능함. 단, 논농업에 이용하지 않았을 경우 변동직불금 지급 불가

31	사례	농지가 산지와 연접하여 농지의 기능을 상실되어 있는 경우	
유형별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의 유지 및 관리	관련 직불금	
		고정·변동직불금	

판단기준

- ☒ 고정직접지불금은 농작물의 생산량 및 가격 변동과 상관없이 논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에게 지급하는 직접지불금임
- ☒ 이행요건으로 농지에서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관리하고 있을 경우이므로 농지의 기능이 상실되어 농작물 생산이 불가능한 상태인 경우에는 **불이행으로 판단**

32	사례	특용작물 재배단지 하우스 시설물 설치면적 산정시 민원 발생 우려	
유형별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의 유지 및 관리	관련 직불금	
		고정·변동직불금	

판단기준

- ☒ 고정직접지불금은 농작물의 생산량 및 가격 변동과 상관없이 논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에게 지급하는 직접지불금임
- ☒ 특용작물 재배단지의 하우스시설물 설치면적 산정은 하우스 부지면적까지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함

33	사례	동일필지에 일부 경작 및 휴경면적 산정시 민원발생 우려	
유형별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의 유지 및 관리	관련 직불금	
		고정·변동직불금	

판단기준

- ☒ 고정직접지불금은 농작물의 생산량 및 가격 변동과 상관없이 논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에게 지급하는 직접지불금임
- ☒ 동일필지에 일부 경작 및 휴경면적을 산정할 경우 경작면적은 농작물을 식재한 부지면적까지 포함하여 산정하고 나머지 면적을 휴경면적으로 함

34	사례	신청필지에 객토작업으로 현 상태를 구별하기 어려운 상태	
유형별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의 유지 및 관리	관련 직불금	
		고정·변동직불금	

판단기준

- ☒ 고정직접지불금은 농작물의 생산량 및 가격 변동과 상관없이 논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에게 지급하는 직접지불금임
- ☒ 이행요건이 농지에서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관리하는 것이나 객토작업으로 복토를 하여 담수능력이 없다 하여도 밭작물 식재가 가능한 농지는 **이행으로 판단** 다만 농작물을 식재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경우로 휴경농지 상태가 아닌 때에는 **불이행으로 판단**

35	사례	논의 형상은 유지되고 있으나 잡종지로 방치되어 사실상 벼농사가 곤란한 경우	
유형별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의 유지 및 관리	관련 직불금	
		고정·변동직불금	

판단기준

- ▣ 고정직접지불금은 농작물의 생산량 및 가격 변동과 상관없이 논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에게 지급하는 직접지불금임
- ▣ 이행요건이 농지에서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관리하는 것이나 잡종지로 방치되어 사실상 벼농사가 곤란하다 하여도 밭작물 식재가 가능한 농지는 **이행으로 판단** 다만 농작물을 식재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경우로 휴경농지 상태가 아닌 때에는 **불이행으로 판단**

36	사례	과수목을 일정간격마다 식재하고 그 사이에 타작물을 심은 상태	
유형별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의 유지 및 관리	관련 직불금	
		고정·변동직불금	

판단기준

- ▣ 고정직접지불금은 농작물의 생산량 및 가격 변동과 상관없이 논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에게 지급하는 직접지불금임
- ▣ 이행요건이 농지에서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관리하는 것이나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경작하는 농작물 또는 농업인 등이 재배하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농지는 지급대상 농지이므로 과수목을 일정간격마다 식재하고 그 사이에 타작물을 심은 상태라 하더라도 **이행으로 판단**

이웃농지와의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 설치 및 관리

1. 비경지정리지역의 농지로 지적과 현상이 상이한 경우 47
2. 하천지역 등의 농지로 이웃농지와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47
3. 공유지분의 경우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48
4. 개인이 영농편의를 목적으로 농지를 분할·합병한 경우 48
5. 갈대, 잡목 등이 무성하여 경계가 불확실한 경우 49
6. 하나의 필지를 나누어 여러 작물을 식재하는 경우 49
7. 산중턱 또는 골짜기에 위치한 농지로 진입로뿐만 아니라 농지의 위치,
경계구분이 어려운 경우 50
8. 논둑에 잔디 식재 및 기계화 포장이 된 경우 50
9. 이웃 농지와의 경계에 팻말을 설치한 경우 51
10. 벼농사를 조기(7월)에 수확하고 일시적으로 경계가 상실된 경우 51
11. 자연재해로 경계가 일치하지 않고 뚝이나 제방이 무너져 있는 상태 52
12. 도면과 다르게 임의로 경계를 나누어 타작물과 쌀을 재배하는 상태 52
13. 산 중턱에 있는 농지로 필지 구분이 불명확하나 농기계진입 가능 53
14. 합필하여 경계구분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함 53
15. 신청자의 임의적 농지형상 변경으로 도면과 현장의 불일치로
경계구분이 어려운 상태 54
16. 도면상 경계와 현지조사상 경계가 일치하지 않고 구분이 가능한 뚝이나
제방이 무너져있어 관리가 되지 않은 상태 54
17. 법면으로 인한 면적이 공부와 불일치로 경계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55
18. 수해 등으로 농지가 유실되어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 55
19. 한명의 소유자가 연접지번농지 여러 필지를 개인적으로 합필하여
지번 구분 및 경계 구분이 모호한 경우 판단이 어려움 56

1	사례	비경지정리지역의 농지로 지적과 현상이 상이한 경우	
유형별	이웃농지와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의 설치 및 관리	관련 직불금	
		고정직접지불금	

판단기준

- ☑ 고정직접지불금은 농작물의 생산량 및 가격 변동과 상관없이 논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에게 지급하는 직접지불금임
- ☑ 고정직접지불금은 법으로 4가지 지급요건을 정하고 있는 바, 이웃농지와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의 설치 및 관리를 하도록 하는 요건 중 비경 지정리 지역의 농지로 수년간 농작물을 재배하는 과정에서 지적과 현상이 상이한 경우에는 **이행으로 판단**하고 육안으로 보아 신청면적과 조사면적이 차이가 있을 경우는 차이면적(추정) Agrix에 입력

2	사례	하천지역 등의 농지로 이웃농지와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유형별	이웃농지와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의 설치 및 관리	관련 직불금	
		고정직접지불금	

판단기준

- ☑ 고정직접지불금은 농작물의 생산량 및 가격 변동과 상관없이 논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에게 지급하는 직접지불금임
- ☑ 고정직접지불금은 법으로 4가지 지급요건을 정하고 있는 바, 이웃농지와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의 설치 및 관리를 하도록 하는 요건 중 하천 지역 등의 농지로 여러 사람이 지자체 등으로부터 지분을 계약하여 농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는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도 **이행으로 판단**

3	사례	공유지분의 농지로 지분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유형별	이웃농지와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의 설치 및 관리	관련 직불금	
		고정직접지불금	

판단기준

- ☒ 고정직접지불금은 농작물의 생산량 및 가격 변동과 상관없이 논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에게 지급하는 직접지불금임
- ☒ 고정직접지불금은 법으로 4가지 지급요건을 정하고 있는 바, 이웃농지와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의 설치 및 관리를 하도록 하는 요건 중 공유 지분의 농지는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도 **이행으로 판단**

4	사례	개인이 영농편의를 목적으로 농지를 분할·합병한 경우	
유형별	이웃농지와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의 설치 및 관리	관련 직불금	
		고정직접지불금	

판단기준

- ☒ 고정직접지불금은 농작물의 생산량 및 가격 변동과 상관없이 논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에게 지급하는 직접지불금임
- ☒ 고정직접지불금은 법으로 4가지 지급요건을 정하고 있는 바, 이웃농지와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의 설치 및 관리를 하도록 하는 요건 중 개인이 영농편의를 목적으로 농지를 분할·합병한 경우는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도 **이행으로 판단**하고 육안으로 보아 신청면적과 조사면적이 차이가 있을 경우 차이면적(추정)을 Agrix에 입력

5	사례	갈대, 잡목 등이 무성하여 경계가 불확실한 경우	
유형별	이웃농지와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의 설치 및 관리	관련 직불금	
		고정직접지불금	

판단기준

- ☒ 고정직접지불금은 농작물의 생산량 및 가격 변동과 상관없이 논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에게 지급하는 직접지불금임
- ☒ 고정직접지불금은 법으로 4가지 지급요건을 정하고 있는 바, 논두렁 등에 갈대, 잡목 등이 무성하여 이웃농지의 농작물 생산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불이행으로 판단하고 사진 및 불이행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비치하여야 하며, 천변이나 임야 주변의 농지는 사안별로 판단이 요구됨

6	사례	하나의 필지를 나누어 여러 작물을 식재하는 경우	
유형별	이웃농지와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의 설치 및 관리	관련 직불금	
		고정직접지불금	

판단기준

- ☒ 고정직접지불금은 농작물의 생산량 및 가격 변동과 상관없이 논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에게 지급하는 직접지불금임
- ☒ 고정직접지불금은 법으로 4가지 지급요건을 정하고 있는 바, 하나의 필지를 나누어 여러 작물을 식재하는 경우에는 해당필지의 경계 구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면 이행으로 판단하고 사례 2(하천지역 등의 농지)와 같은 경우에는 사례 2를 참조하여 판단

7	사례	산중턱 또는 골짜기에 위치한 농지로 진입로뿐만 아니라 농지의 위치, 경계 구분이 어려운 경우	
유형별	이웃농지와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의 설치 및 관리	관련 직불금	
		고정직접지불금	

판단기준

- ☒ 고정직접지불금은 농작물의 생산량 및 가격 변동과 상관없이 논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에게 지급하는 직접지불금임
- ☒ 고정직접지불금은 법으로 4가지 지급요건을 정하고 있는 바, 산중턱 또는 골짜기에 위치한 농지로서 진입로뿐만 아니라 농지의 위치, 경계 구분이 어려운 경우는 농지관리가 되고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불이행으로 판단**하고 신청인에게 불이행확인서를 받아 반드시 비치

8	사례	논둑에 잔디 식재 및 기계화 포장이 된 경우	
유형별	이웃농지와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의 설치 및 관리	관련 직불금	
		고정직접지불금	

판단기준

- ☒ 고정직접지불금은 농작물의 생산량 및 가격 변동과 상관없이 논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에게 지급하는 직접지불금임
- ☒ 고정직접지불금은 법으로 4가지 지급요건을 정하고 있는 바, 논둑에 잔디 식재 및 기계화 포장을 한 경우에는 이웃농지와 구분이 될 뿐만 아니라 영농 편의성에 있어도 좋은 여건이므로 **이행으로 판단**

9	사례	이웃농지와 경계에 팻말을 설치한 경우	
유형별	이웃농지와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의 설치 및 관리	관련 직불금	
		고정직접지불금	

판단기준

- ☒ 고정직접지불금은 농작물의 생산량 및 가격 변동과 상관없이 논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에게 지급하는 직접지불금임
- ☒ 고정직접지불금은 법으로 4가지 지급요건을 정하고 있는 바, 이웃농지와 구분을 위하여 팻말을 설치한 경우는 영농 편의를 위해 이웃농지와 논둑 없이 관리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행으로 판단**

10	사례	벼농사를 조기(7월)에 수확하고 일시적으로 경계가 상실 된 경우	
유형별	이웃농지와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의 설치 및 관리	관련 직불금	
		고정직접지불금	

판단기준

- ☒ 고정직접지불금은 농작물의 생산량 및 가격 변동과 상관없이 논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에게 지급하는 직접지불금임
- ☒ 고정직접지불금은 법으로 4가지 지급요건을 정하고 있는 바, 벼농사를 조기(7월)에 수확하고 일시적으로 경계가 상실 된 경우는 당해연도 지급 요건에는 충족하였으므로 **이행으로 판단**

11	사례	자연재해로 경계가 일치하지 않고 똑이나 제방이 무너져 있는 상태	
유형별	이웃농지와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의 설치 및 관리	관련 직불금	
		고정직접지불금	

판단기준

- ☒ 고정직접지불금은 농작물의 생산량 및 가격 변동과 상관없이 논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에게 지급하는 직접지불금임
- ☒ 농지는 이행요건으로 이웃 농지와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를 설치하고 관리를 해야하나 자연재해 등으로 똑이나 제방이 무너져 있는 상태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복구하면 원상회복이 가능하므로 **이행으로 판단** 다만 복구로도 회복되지 않는 유실부분은 **불이행으로 판단**

12	사례	도면과 다르게 임의로 경계를 나누어 타작물과 쌀을 재배하는 상태	
유형별	이웃농지와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의 설치 및 관리	관련 직불금	
		고정직접지불금	

판단기준

- ☒ 고정직접지불금은 농작물의 생산량 및 가격 변동과 상관없이 논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에게 지급하는 직접지불금임
- ☒ 이행요건이 이웃 농지와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를 설치 및 관리하는 것으로 도면과 다를지라도 육안에 의하여 이웃농지와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를 설치하여 타작물과 쌀을 재배하고 있으면 **이행으로 판단**

13	사례	산 중턱에 있는 농지로 필지 구분이 불명확하나 농기계 진입 가능	
유형별	이웃농지와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의 설치 및 관리	관련 직불금	
		고정직접지불금	

판단기준

- ☑ 고정직접지불금은 농작물의 생산량 및 가격 변동과 상관없이 논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에게 지급하는 직접지불금임
- ☑ 이행요건이 이웃 농지와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를 설치 및 관리하는 것으로 산 중턱에 있는 농지로 필지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라도 육안에 의하여 이웃농지와 경계 구분이 가능하면 **이행으로 판단**

14	사례	합필하여 경계구분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함	
유형별	이웃농지와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의 설치 및 관리	관련 직불금	
		고정직접지불금	

판단기준

- ☑ 고정직접지불금은 농작물의 생산량 및 가격 변동과 상관없이 논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에게 지급하는 직접지불금임
- ☑ 이행요건이 이웃 농지와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를 설치 및 관리하는 것으로 합필하여 경계 구분이 어려울 지라도 육안에 의하여 이웃농지와 경계 구분이 가능하면 **이행으로 판단**

15	사례	신청자의 임의적 농지형상 변경으로 도면과 현장의 불일치로 경계구분이 어려운 상태	
유형별	이웃농지와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의 설치 및 관리	관련 직불금	고정직접지불금
		고정직접지불금	

판단기준

- ☑ 고정직접지불금은 농작물의 생산량 및 가격 변동과 상관없이 논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에게 지급하는 직접지불금임
- ☑ 이행요건이 이웃 농지와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를 설치 및 관리하는 것으로 단순히 경계 구분이 어려운 상태에서 육안에 의하여 이웃농지와 경계 구분이 가능하면 **이행으로 판단**하나 다만 농지형상 변경으로 농작물의 생산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불이행으로 판단**

16	사례	도면상 경계와 현지조사상 경계가 일치하지 않고 구분이 가능한 뚝이나 제방이 무너져있어 관리가 되지 않은 상태	
유형별	이웃농지와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의 설치 및 관리	관련 직불금	고정직접지불금
		고정직접지불금	

판단기준

- ☑ 고정직접지불금은 농작물의 생산량 및 가격 변동과 상관없이 논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에게 지급하는 직접지불금임
- ☑ 이행요건이 이웃 농지와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를 설치 및 관리하는 것으로 도면상 경계와 일치하지 않을지라도 육안에 의하여 이웃농지와 경계 구분이 가능하면 **이행으로 판단**하며, 뚝이나 제방이 무너졌으나 원상회복이 가능한 경우에도 **이행으로 판단**하나 다만 관리하지 않아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지 못할 정도로 토양 유실상태로 있거나 경계 구분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불이행으로 판단**

17	사례	법면으로 인한 면적이 공부와 불일치로 경계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유형별	이웃농지와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의 설치 및 관리	관련 직불금	
		고정직접지불금	

판단기준

- ☑ 고정직접지불금은 농작물의 생산량 및 가격 변동과 상관없이 논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에게 지급하는 직접지불금임
- ☑ 이행요건이 이웃 농지와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공부와 면적이 일치하지 않을지라도 육안에 의하여 이웃농지와 경계 구분이 가능하면 **이행으로 판단**

18	사례	수해 등으로 농지가 유실되어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	
유형별	이웃농지와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의 설치 및 관리	관련 직불금	
		고정직접지불금	

판단기준

- ☑ 고정직접지불금은 농작물의 생산량 및 가격 변동과 상관없이 논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에게 지급하는 직접지불금임
- ☑ 이행요건으로 농지는 이웃 농지와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를 설치하고 관리를 해야하나 수해 등으로 농지가 유실되어 경계가 불분명하게 된 상태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복구하면 원상회복이 가능하므로 **이행으로 판단** 다만 복구로도 회복되지 않는 유실부분은 **불이행으로 판단**

19	사례	한명의 소유자가 연접지번농지 여러 필지를 개인적으로 합필하여 지번 구분 및 경계 구분이 모호한 경우 판단이 어려움	
유형별		이웃농지와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의 설치 및 관리	관련 직불금 고정직접지불금

판단기준

- 고정직접지불금은 농작물의 생산량 및 가격 변동과 상관없이 논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에게 지급하는 직접지불금임

- 이행요건이 이웃 농지와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개인적으로 합필하여 지번 구분 및 경계 구분이 모호할지라도 육안에 의하여 이웃농지와 경계 구분이 가능하면 **이행으로 판단** 다만 경계 설정이 불가능하거나 경계를 설치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경계 구분이 모호한 경우에는 **불이행으로 판단**(해당 농지의 고정직접지불금 1/2감액 지급 대상임)

농지 주변의 용·배수로 유지 및 관리

1. 시설재배(하우스 등)지 주변의 용·배수 시설이 모호한 상태 59
2. 용·배수로에 농자재 적치 장소로 이용하는 상태 59
3. 인삼 등을 재배하면서 용수로를 배수용으로 사용하는 상태 60
4. 천수답 및 임야를 개답한 농지로 용·배수로가 모호한 상태 60
5. 집중 호우 등으로 용·배수로가 매몰되거나 무너져 있는 상태 61
6. 발작물 및 과수원으로 이용하고 있는 농지의 용·배수 시설이
모호한 상태 61
7. 용·배수로에 수초가 무성한 상태 62
8. 관리가 소홀한 용·배수로에 여러 농지가 접하고 있는 경우 62
9. 배수로 관리를 하지 않아 배수가 잘 되지 않은 경우 63
10. 용·배수로 없이 관정 등을 이용하고 있는 상태 63
11. 임야를 개답하여 용, 배수로가 모호한 상태 64
12. 용·배수로에 건설장비로 막혀있는 상태 64
13. 잡초가 무성하여 관리를 하지 않아 배수가 잘되지 않는 상태 65
14. 한 개의 용·배수로에 여러 농지가 접하고 있을 경우
(어느 농지의 관리자가 소홀했는지 판단여부) 65
15. 신청필지 주위에 건설현장에 필요한 자재들로 인해 임시적으로
용·배수로 구분이 어려운 상태 66
16. 용·배수로 주변 청소를 하지 않아 쓰레기가 방치되어 원활한
용수를 방해하는 경우 66
17. 천수답의 산간농지로 용·배수로 없이 발작물을 경작하는 경우 67
18. 발작물 재배로 이웃 농지의 원활한 용수를 방해하는 경우 67

1	사례	시설재배(하우스 등) 농지 주변의 용·배수로 시설이 모호한 상태	
유형별	농지 주변의 용·배수로 유지 및 관리	관련 직불금	
		고정직접지불금	

판단기준

- ☒ 고정직접지불금은 농작물의 생산량 및 가격 변동과 상관없이 논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에게 지급하는 직접지불금임
- ☒ 고정직접지불금은 법으로 4가지 지급요건을 정하고 있는 바, 물을 가두어 벼를 재배하는 농지와 다르게 농지 형상을 유지 하면서 하우스 등을 설치 하여 농작물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용·배수로가 그다지 필요하지 않으므로 모호한 상태라도 **이행으로 판단**

2	사례	용·배수로에 농자재 적치 장소로 이용하는 상태	
유형별	농지 주변의 용·배수로 유지 및 관리	관련 직불금	
		고정직접지불금	

판단기준

- ☒ 고정직접지불금은 농작물의 생산량 및 가격 변동과 상관없이 논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에게 지급하는 직접지불금임
- ☒ 고정직접지불금은 법으로 4가지 지급요건을 정하고 있는 바, 물을 가두어 벼를 재배하는 농지와 다르게 농지 형상을 유지 하면서 벼나 타작물을 식재하여 생산하거나 또는 휴경하는 경우에는 용·배수로에 농자재 적치 장소로 이용하고 있더라도 **이행으로 판단**

3	사례	인삼 등을 재배하면서 용수로를 배수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유형별	농지 주변의 용·배수로 유지 및 관리	관련 직불금	
		고정직접지불금	

판단기준

- ☒ 고정직접지불금은 농작물의 생산량 및 가격 변동과 상관없이 논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에게 지급하는 직접지불금임
- ☒ 고정직접지불금은 법으로 4가지 지급요건을 정하고 있는 바, 물을 가두어 버릴 재배하는 농지와 다르게 인삼 등을 재배하면서 용수로를 배수용으로 사용하고 있더라도 **이행으로 판단**

4	사례	천수답 및 임야를 개간한 농지로 용·배수호가 모호한 상태	
유형별	농지 주변의 용·배수로 유지 및 관리	관련 직불금	
		고정직접지불금	

판단기준

- ☒ 고정직접지불금은 농작물의 생산량 및 가격 변동과 상관없이 논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에게 지급하는 직접지불금임
- ☒ 고정직접지불금은 법으로 4가지 지급요건을 정하고 있는 바, 경지정리가 되어있지 않은 천수답 및 임야를 개간한 답 등이 용·배수로 없이 월답식 등으로 물을 공급할 경우에는 **이행으로 판단**

5	사례	집중 호우 등으로 용·배수로가 매몰되거나 무너져 있는 상태	
유형별	농지 주변의 용·배수로 유지 및 관리	관련 직불금	
		고정직접지불금	

판단기준

- ☒ 고정직접지불금은 농작물의 생산량 및 가격 변동과 상관없이 논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에게 지급하는 직접지불금임
- ☒ 고정직접지불금은 법으로 4가지 지급요건을 정하고 있는 바, 집중 호우 등으로 용·배수로가 매몰되거나 무너져 있는 상태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복구하면 원상회복이 가능하므로 **이행으로 판단**

6	사례	밭 및 과수원으로 이용하고 있는 농지의 용·배수로가 모호한 상태	
유형별	농지 주변의 용·배수로 유지 및 관리	관련 직불금	
		고정직접지불금	

판단기준

- ☒ 고정직접지불금은 농작물의 생산량 및 가격 변동과 상관없이 논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에게 지급하는 직접지불금임
- ☒ 고정직접지불금은 법으로 4가지 지급요건을 정하고 있는 바, 대상농지를 밭 및 과수원으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용·배수로가 모호한 상태이라도 **이행으로 판단**

7	사례	용·배수로에 수초가 무성한 상태	
유형별	농지 주변의 용·배수로 유지 및 관리	관련 직불금	
		고정직접지불금	

판단기준

- ☒ 고정직접지불금은 농작물의 생산량 및 가격 변동과 상관없이 논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에게 지급하는 직접지불금임
- ☒ 고정직접지불금은 법으로 4가지 지급요건을 정하고 있는 바, 용·배수로에 수초가 무성한 상태라도 그 용·배수로를 이용하여 물을 가두어 벼를 재배하거나 타작물 식재 및 휴경할 경우에는 **이행으로 판단**

8	사례	관리가 소홀한 용·배수로에 여러 농지가 접하고 있는 경우	
유형별	농지 주변의 용·배수로 유지 및 관리	관련 직불금	
		고정직접지불금	

판단기준

- ☒ 고정직접지불금은 농작물의 생산량 및 가격 변동과 상관없이 논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에게 지급하는 직접지불금임
- ☒ 고정직접지불금은 법으로 4가지 지급요건을 정하고 있는 바, 관리가 소홀한 용·배수로에 여러 농지가 접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용·배수로를 이용하고 있는 농지 전체에 대하여 **불이행으로 판단**하고 사진 및 불이행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비치

9 사례	배수로 관리를 하지 않아 배수가 잘 되지 않은 경우	
유형별	농지 주변의 용·배수로 유지 및 관리	관련 직불금
		고정직접지불금

판단기준

- ☒ 고정직접지불금은 농작물의 생산량 및 가격 변동과 상관없이 논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에게 지급하는 직접지불금임
- ☒ 고정직접지불금은 법으로 4가지 지급요건을 정하고 있는 바, 배수로 관리를 하지 않아 배수가 잘 되지 않은 경우라도 물을 가두어 벼를 재배하고 있거나 타작물 식재, 휴경 등의 방법으로 농지를 관리하고 있으면 **이행으로 판단**

10 사례	용·배수로 없이 관정 등을 이용하고 있는 상태	
유형별	농지 주변의 용·배수로 유지 및 관리	관련 직불금
		고정직접지불금

판단기준

- ☒ 고정직접지불금은 농작물의 생산량 및 가격 변동과 상관없이 논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에게 지급하는 직접지불금임
- ☒ 고정직접지불금은 법으로 4가지 지급요건을 정하고 있는 바, 물을 가두어 벼를 재배하면서 용·배수로 없이 관정 등을 이용하여 생산하는 경우에는 **이행으로 판단**

11 사례	임야를 개답하여 용, 배수로가 모호한 상태	
유형별	농지 주변의 용·배수로 유지 및 관리	관련 직불금
		고정직접지불금

판단기준

- ☒ 고정직접지불금은 농작물의 생산량 및 가격 변동과 상관없이 논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에게 지급하는 직접지불금임
- ☒ 이행요건으로 농지 주변의 용·배수로를 유지하고 관리하여야 하나 경지 정리가 되어있지 않은 천수답 및 임야를 개간한 답 등이 용·배수로가 모호하거나 용·배수로가 없어 월답식 등으로 물을 공급할 경우에는 **이행으로 판단**

12 사례	용·배수로에 건설장비로 막혀있는 상태	
유형별	농지 주변의 용·배수로 유지 및 관리	관련 직불금
		고정직접지불금

판단기준

- ☒ 고정직접지불금은 농작물의 생산량 및 가격 변동과 상관없이 논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에게 지급하는 직접지불금임
- ☒ 용·배수가 건설장비 등으로 막혀 있을지라도 물을 가두어 벼를 재배하고 있거나 타작물 식재, 휴경등의 방법으로 농지를 관리하고 있으면 **이행으로 판단**

13 사례	잡초가 무성하여 관리를 하지 않아 배수가 잘되지 않는 상태	
유형별	농지 주변의 용·배수로 유지 및 관리	관련 직불금
		고정직접지불금

판단기준

- ☑ 고정직접지불금은 농작물의 생산량 및 가격 변동과 상관없이 논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에게 지급하는 직접지불금임
- ☑ 배수로에 잡초가 무성하여 배수가 잘 되지 않는 경우라도 물을 가두어 벼를 재배하고 있거나 타작물 식재, 휴경등의 방법으로 농지를 관리하고 있으면 **이행으로 판단**

14 사례	한 개의 용·배수로에 여러 농지가 접하고 있을 경우(어느 농지의 관리자가 소홀했는지 판단여부)	
유형별	농지 주변의 용·배수로 유지 및 관리	관련 직불금
		고정직접지불금

판단기준

- ☑ 고정직접지불금은 농작물의 생산량 및 가격 변동과 상관없이 논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에게 지급하는 직접지불금임
- ☑ 용·배수로에 여러 농지가 접하고 있을 경우에 관리책임은 규약 등으로 정한바가 없으면 공동책임을 지는 것으로 자기가 관리하는 부분만큼의 비율로 관리책임이 있다 할 수 있는바 자기 관리책임 부분에서의 용·배수로 관리소홀로 이웃농지의 용·배수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로 인하여 이웃 농지가 물을 가두어 벼를 재배할 수 없다면 **불이행으로 판단**

15	사례	신청필지 주위에 건설현장에 필요한 자재들로 인해 임시적으로 용·배수로 구분이 어려운 상태	
유형별	농지 주변의 용·배수로 유지 및 관리	관련 직불금	
		고정직접지불금	

판단기준

- ☒ 고정직접지불금은 농작물의 생산량 및 가격 변동과 상관없이 논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에게 지급하는 직접지불금임
- ☒ 이행요건으로 농지 주변의 용·배수로를 유지하고 관리하여야 하나 신청필지 주위에 건설현장에 필요한 자재들로 인해 임시적으로 용·배수로 구분이 어려운 상태이지만 신청농지에 물을 가두어 벼를 재배하고 있거나 타작물 식재, 휴경등의 방법으로 농지를 관리하고 있으면 **이행으로 판단**

16	사례	용·배수로 주변 청소를 하지 않아 쓰레기가 방치되어 원활한 용수를 방해하는 경우	
유형별	농지 주변의 용·배수로 유지 및 관리	관련 직불금	
		고정직접지불금	

판단기준

- ☒ 고정직접지불금은 농작물의 생산량 및 가격 변동과 상관없이 논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에게 지급하는 직접지불금임
- ☒ 이행요건으로 농지 주변의 용·배수로를 유지하고 관리하여야 하나 용·배수로 주변 청소를 하지 않아 쓰레기가 방치되어 원활한 용수를 방해하는 경우라도 물을 가두어 벼를 재배하고 있거나 타작물 식재, 휴경등의 방법으로 농지를 관리하고 있으면 **이행으로 판단**

17 사례	천수답의 산간농지로 용·배수로 없이 밭작물을 경작하는 경우	
유형별	농지 주변의 용·배수로 유지 및 관리	관련 직불금
		고정직접지불금

판단기준

- ☑ 고정직접지불금은 농작물의 생산량 및 가격 변동과 상관없이 논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에게 지급하는 직접지불금임
- ☑ 이행요건으로 농지 주변의 용·배수로를 유지하고 관리하여야 하나 천수답의 산간농지로 용·배수로 없이 밭작물을 경작하는 경우에는 용·배수로가 그다지 필요하지 않으므로 **이행으로 판단**

18 사례	밭작물 재배로 이웃 농지의 원활한 용수를 방해하는 경우	
유형별	농지 주변의 용·배수로 유지 및 관리	관련 직불금
		고정직접지불금

판단기준

- ☑ 고정직접지불금은 농작물의 생산량 및 가격 변동과 상관없이 논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에게 지급하는 직접지불금임
- ☑ 이행요건이 농지 주변의 용·배수로를 유지하고 관리하여야 하므로 이웃 농지의 원활한 용수를 방해함으로 이웃농지가 물을 가두어 벼를 재배할 수 없어 이웃농지 경작자의 민원 제기 등이 있다면 **불이행으로 판단**

이웃농지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잡초 제거

1. 갈대, 버드나무, 다년생 잡목 등이 우거져 있는 상태 71
2. 잡초 등이 무성하나 제거하면 농지로 이용할 수 있는 경우 71
3. 발작물 식재 및 과수원으로 이용하고 있으나
일부분이 잡초가 무성한 경우 72
4. 농작물을 친환경 및 유기농법으로 생산하려는 목적 등의 사유로
농작물과 잡초가 같이 자라고 있는 경우 72
5. 나무를 식재하여 그들이 드리워 이웃경작자의 민원 제기된 농지 73
6. 상당기간 무단방치로 잡초가 무성하여 미관을 해치고
이웃농지 경작 농업인으로부터 원성을 사는 경우 73
7. 잡초 미 제거로 병충해 발생 근원지로서 이웃농지 경작자로부터
민원이 제기 되는 경우 74
8. 작물과 잡초가 같이 있는 상태일 때 객관적인 기준이 없는 상태 74
9. 유기농법의 하나라며 잡초를 방치할 경우 판단곤란 75
10. 농지관리 정도의 기준이 없어 조사자 판단의 어려움 75
11. 이웃농지의 영농에 지장은 없으나 잡초가 무성한 경우 76
12. 미식농지의 잡초가 무성하여 인근농지와 경계구분에 애로가 있음 76
13. 산간농지 야생동물 피해로 방치된 농지는 판단이 어려움 77

1	사례	갈대, 버드나무, 다년생 잡목 등이 우거져 있는 상태	
유형별	이웃농지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잡초 제거	관련 직불금	
		고정직접지불금	

판단기준

- ☒ 고정직접지불금은 농작물의 생산량 및 가격 변동과 상관없이 논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에게 지급하는 직접지불금임
- ☒ 고정직접지불금은 법으로 4가지 지급요건을 정하고 있는바 논두렁 등 경계에 갈대, 버드나무, 다년생 잡목 등이 우거져 이웃농지의 영농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 불이행으로 판단하고 사진 및 불이행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비치하여야 하며, 천변이나 임야주변의 농지는 사안별로 판단이 요구됨

2	사례	잡초 등이 무성하나 제거하면 농지로 이용할 수 있는 경우	
유형별	이웃농지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잡초 제거	관련 직불금	
		고정직접지불금	

판단기준

- ☒ 고정직접지불금은 농작물의 생산량 및 가격 변동과 상관없이 논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에게 지급하는 직접지불금임
- ☒ 고정직접지불금은 법으로 4가지 지급요건을 정하고 있는 바, 잡초 등이 무성하나 제거하면 농지로 이용할 수 있고 이웃농지 경작자의 민원 제기 등이 없는 경우에는 이행으로 판단

3	사례	밭작물 식재 및 과수원으로 이용하고 있으나 일부분이 잡초가 무성한 경우	
유형별	이웃농지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잡초 제거	관련 직불금	
		고정직접지불금	

판단기준

- ☑ 고정직접지불금은 농작물의 생산량 및 가격 변동과 상관없이 논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에게 지급하는 직접지불금임
- ☑ 고정직접지불금은 법으로 4가지 지급요건을 정하고 있는 바, 밭작물 식재 및 과수원으로 이용하고 있으나 일부분이 잡초가 무성한 경우는 **이행으로 판단**

4	사례	농작물을 친환경 및 유기농법으로 생산하려는 목적 등의 사유로 농작물과 잡초가 같이 자라고 있는 경우	
유형별	이웃농지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잡초 제거	관련 직불금	
		고정직접지불금	

판단기준

- ☑ 고정직접지불금은 농작물의 생산량 및 가격 변동과 상관없이 논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에게 지급하는 직접지불금임
- ☑ 고정직접지불금은 법으로 4가지 지급요건을 정하고 있는 바, 농작물을 친환경 및 유기농법으로 생산하려는 목적 등의 사유로 농작물과 잡초가 같이 자라고 있는 경우는 **이행으로 판단**

5	사례	나무를 식재하여 그들이 드리워 이웃경작자의 민원이 제기된 경우	
유형별	이웃농지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잡초 제거	관련 직불금	
		고정직접지불금	

판단기준

- ☒ 고정직접지불금은 농작물의 생산량 및 가격 변동과 상관없이 논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에게 지급하는 직접지불금임
- ☒ 고정직접지불금은 법으로 4가지 지급요건을 정하고 있는 바, 나무를 식재하여 그들이 드리워 이웃경작자의 민원이 제기된 경우라도 농업인들이 소득증대를 위하여 다년성 식물을 재배한 경우에는 고정직접지불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公社의 현장조사 시에는 **이행으로 판단**

6	사례	상당기간 무단방치로 잡초가 무성하여 미관을 해치고 이웃농지 경작 농업인으로부터 원성을 사는 경우	
유형별	이웃농지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잡초 제거	관련 직불금	
		고정직접지불금	

판단기준

- ☒ 고정직접지불금은 농작물의 생산량 및 가격 변동과 상관없이 논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에게 지급하는 직접지불금임
- ☒ 고정직접지불금은 법으로 4가지 지급요건을 정하고 있는 바, 상당기간 무단방치로 잡초가 무성하여 미관을 해치고 이웃농지 경작 농업인으로부터 원성을 사는 경우는 **불이행으로 판단**하고 사진 및 불이행확인서 등 증빙자료 비치

7 사례	잡초 미 제거로 병충해 발생 근원지로서 이웃농지 경작자로부터 민원이 제기 되는 경우	
유형별	이웃농지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잡초 제거	관련 직불금
		고정직접지불금

판단기준

- ☑ 고정직접지불금은 농작물의 생산량 및 가격 변동과 상관없이 논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에게 지급하는 직접지불금임
- ☑ 고정직접지불금은 법으로 4가지 지급요건을 정하고 있는 바, 잡초 미 제거로 병충해 발생 근원지로서 이웃농지 경작자로부터 민원이 제기 되는 경우 불이행으로 판단하고 사진 및 불이행확인서 등 증빙자료 비치

8 사례	작물과 잡초가 같이 있는 상태일 때 객관적인 기준이 없는 상태	
유형별	이웃농지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잡초 제거	관련 직불금
		고정직접지불금

판단기준

- ☑ 고정직접지불금은 농작물의 생산량 및 가격 변동과 상관없이 논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에게 지급하는 직접지불금임
- ☑ 이행요건이 이웃농지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잡초를 제거하여야 하나 작물과 잡초가 같이 있는 상태인 경우 이로 인하여 이웃농지 경작자의 민원제기 등이 없는 경우에는 이행으로 판단

9	사례	유기농법의 하나라며 잡초를 방치할 경우 판단곤란	
유형별	이웃농지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잡초 제거	관련 직불금	
		고정직접지불금	

판단기준

- ☒ 고정직접지불금은 농작물의 생산량 및 가격 변동과 상관없이 논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에게 지급하는 직접지불금임
- ☒ 이행요건이 이웃농지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잡초를 제거하여야 하나 농작물을 친환경 및 유기농법에 의하여 생산하려는 목적 등의 사유로 농작물과 잡초가 같이 자라고 있는 경우에는 **이행으로 판단**

10	사례	농지관리 정도의 기준이 없어 조사자 판단의 어려움	
유형별	이웃농지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잡초 제거	관련 직불금	
		고정직접지불금	

판단기준

- ☒ 고정직접지불금은 농작물의 생산량 및 가격 변동과 상관없이 논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에게 지급하는 직접지불금임
- ☒ 농지관리란 이행점검요건에 부합되게 농지를 관리하여 농지에 즉시 농작물을 식재할 수 있으며, 벼재배 경우 물을 가둘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는 것임

11	사례	이웃농지의 영농에 지장은 없으나 잡초가 무성한 경우 처리	
유 형 별	이웃농지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잡초 제거	관련 직불금	
		고정직접지불금	

판단기준

- ☒ 고정직접지불금은 농작물의 생산량 및 가격 변동과 상관없이 논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에게 지급하는 직접지불금임
- ☒ 이행요건이 이웃농지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잡초를 제거하여야 하나 잡초 등이 무성한 경우라 할지라도 잡초를 제거하면 농지로 이용할 수 있고 이웃농지 경작자의 민원제기 등이 없는 경우에는 **이행으로 판단**

12	사례	미식농지의 잡초가 무성하여 인근농지와 경계구분에 애로가 있음	
유 형 별	이웃농지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잡초 제거	관련 직불금	
		고정직접지불금	

판단기준

- ☒ 고정직접지불금은 농작물의 생산량 및 가격 변동과 상관없이 논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에게 지급하는 직접지불금임
- ☒ 이행요건이 이웃농지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잡초를 제거하여야 하나 잡초 등이 무성한 경우라 할지라도 잡초를 제거하면 농지로 이용할 수 있고 육안으로 경계 구분을 할 수 있으며 이웃농지 경작자의 민원제기 등이 없는 경우에는 **이행으로 판단**

13	사례	산간농지 야생동물 피해로 방치된 농지는 판단이 어려움	
유형별	이웃농지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잡초 제거	관련 직불금	
		고정직접지불금	

판단기준

- ☒ 고정직접지불금은 농작물의 생산량 및 가격 변동과 상관없이 논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에게 지급하는 직접지불금임
- ☒ 이행요건이 이웃농지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잡초를 제거하여야 하나 산간 농지 야생동물 피해로 방치된 농지라 할지라도 농지로 이용할 수 있고 육안으로 경계 구분을 할 수 있으며 이웃농지 경작자의 민원제기 등이 없는 경우에는 **이행으로 판단**

물을 가두어 벼를 재배했는지 여부

1. 논외의 형상을 유지하고 발벼(산두)를 재배하는 경우 81
2. 모내기를 하였으나 수초가 무성한 상태 81
3. 일부는 벼를 식재하고 일부는 휴경 및 타 작물 식재의 경우 82
4. 모내기를 하지 않았는데 자연발아 되어 드문드문 벼가 있는 상태 82
5. 모내기 후, 장마·가뭄 등으로 벼의 생육이 좋지 않은 경우 83
6. 물을 가두어 미나리, 연근, 왕골을 식재한 경우 변동직불금 지급 여부 83
7. 추수시기가 빠른 벼를 심고 수확 후, 논에 발작물을 심은 상태 84
8. 과수목을 일정간격마다 식재하고 그 사이에 타작물을 심은 상태 84
9. 한 필지에 농업인 임의로 경계를 나누어 타작물과
짚을 동시에 식재한 상태 85
10. 이앙을 하였으나 관리소홀로 잡초가 무성하여 영농에 실패한 경우 85
11. 논외의 형상은 유지되고 있으나 잡종지로 방치되어
사실상 벼농사가 곤란한 경우 86
12. 산두(발벼) 재배시 논벼 재배로 인정요구 민원 발생 86

1	사례	논의 형상을 유지하고 밭벼(산두)를 재배하는 경우	
유형별	물을 가두어 벼를 재배 했는지 여부	관련 직불금	
		변동직접지불금	

판단기준

- ☒ 변동직불금은 고정직불금 지급요건을 갖추고 물을 가두어 쌀을 생산할 경우 산정기준에 의거 농업인등에게 지급하는 직접지불금임
- ☒ 논을의 형상을 유지하고 밭벼(산두)를 재배하거나 밭으로 이용하면서 밭벼(산두)를 재배할 경우에는 물을 가두는 방법으로 쌀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므로 불이행으로 판단하고 사진 및 불이행확인서 등 증빙자료 비치

2	사례	모내기를 하였으나 수초가 무성한 경우	
유형별	물을 가두어 벼를 재배 했는지 여부	관련 직불금	
		변동직접지불금	

판단기준

- ☒ 변동직불금은 고정직불금 지급요건을 갖추고 물을 가두어 쌀을 생산할 경우 산정기준에 의거 농업인등에게 지급하는 직접지불금임
- ☒ 고정직불금 지급요건을 갖추고 물을 가두어 모내기를 하였으나 관리 소홀 등으로 수초가 무성한 경우에는 수확량에 관계없이 변동직불금 지급요건이 되므로 이행으로 판단

3	사례	일부는 벼를 식재하고 일부는 휴경 및 타 작물 식재한 경우	
유형별	물을 가두어 벼를 재배 했는지 여부	관련 직불금	
		변동직접지불금	

판단기준

- ☒ 변동직불금은 고정직불금 지급요건을 갖추고 물을 가두어 쌀을 생산할 경우 산정기준에 의거 농업인등에게 지급하는 직접지불금임
- ☒ 고정직불금 지급요건을 갖추고 물을 가두어 모내기를 일부하고 일부는 휴경 및 타작물을 식재한 경우는 **이행으로 판단**

4	사례	모내기를 하지 않았는데 자연발아 되어 드문드문 벼가 있는 상태	
유형별	물을 가두어 벼를 재배 했는지 여부	관련 직불금	
		변동직접지불금	

판단기준

- ☒ 변동직불금은 고정직불금 지급요건을 갖추고 물을 가두어 쌀을 생산할 경우 산정기준에 의거 농업인등에게 지급하는 직접지불금임
- ☒ 정직불금 지급요건을 갖추고 물을 가두어 쌀을 생산하는 경우에 변동직불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바, 자연발아로 드문드문 벼가 있는 상태는 쌀을 생산하려는 목적이 아니므로 **불이행으로 판단**하고 사진 및 불이행 확인서 등 증빙자료 비치

5	사례	모내기 후, 장마·가뭄 등으로 벼의 생육이 부진한 경우	
유형별	물을 가두어 벼를 재배 했는지 여부	관련 직불금	
		변동직접지불금	

판단기준

- ☒ 변동직불금은 고정직불금 지급요건을 갖추고 물을 가두어 쌀을 생산할 경우 산정기준에 의거 농업인등에게 지급하는 직접지불금임
- ☒ 고정직불금 지급요건을 갖추고 물을 가두어 모내기를 하였으나 장마·가뭄 등으로 벼의 생육이 부진한 경우에는 수확량에 관계없이 변동직불금 지급요건이 되므로 **이행으로 판단**

6	사례	물을 가두어 미나리, 연근, 왕골을 식재한 경우 변동직불금 지급 여부	
유형별	물을 가두어 벼를 재배 했는지 여부	관련 직불금	
		변동직접지불금	

판단기준

- ☒ 변동직불금은 고정직불금 지급요건을 갖추고 물을 가두어 쌀을 생산할 경우 산정기준에 의거 농업인등에게 지급하는 직접지불금임
- ☒ 고정직불금 지급요건을 갖추고 물을 가두어 미나리, 연근, 왕골을 식재한 경우는 쌀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므로 변동직불금 지급요건이 되지 않음

7	사례	추수시기가 빠른 벼를 심고 수확 후, 논에 밭작물을 심은 상태	
유 형 별	물을 가두어 벼를 재배 했는지 여부	관련 직불금	
		변동직접지불금	

판단기준

- ☒ 변동직불금은 고정직불금 지급요건을 갖추고 물을 가두어 쌀을 생산할 경우 산정기준에 의거 농업인등에게 지급하는 직접지불금임
- ☒ 이행요건이 농지에 물을 가두어 쌀을 생산하는 것으로 추수시기가 빠른 벼를 심고 수확 후 논에 밭작물을 심은 상태는 벼 재배후 이모작을 하는 경우로 **이행으로 판단**

8	사례	과수목을 일정간격마다 식재하고 그 사이에 타작물을 심은 상태	
유 형 별	물을 가두어 벼를 재배 했는지 여부	관련 직불금	
		변동직접지불금	

판단기준

- ☒ 변동직불금은 고정직불금 지급요건을 갖추고 물을 가두어 쌀을 생산할 경우 산정기준에 의거 농업인등에게 지급하는 직접지불금임
- ☒ 이행요건이 농지에 물을 가두어 쌀을 생산하는 것으로 물을 가두는 방법으로 쌀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므로 **불이행으로 판단**

9	사례	한 필지에 농업인 임의로 경계를 나누어 타작물과 쌀을 동시에 식재한 상태
유 형 별	물을 가두어 벼를 재배 했는지 여부	관련 직불금
		변동직접지불금

판단기준

- ☒ 변동직불금은 고정직불금 지급요건을 갖추고 물을 가두어 쌀을 생산할 경우 산정기준에 의거 농업인등에게 지급하는 직접지불금임
- ☒ 이행요건이 농지에 물을 가두어 쌀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 필지를 임의로 나누어 타작물과 벼를 같이 재배한 경우 나누어진 부분에 경계 구분이 되어 있으면 물을 가두어 벼를 재배한 부분은 **이행으로 판단**

10	사례	이양을 하였으나 관리소홀로 잡초가 무성하여 영농에 실패한 경우 불이행 처리
유 형 별	물을 가두어 벼를 재배 했는지 여부	관련 직불금
		변동직접지불금

판단기준

- ☒ 변동직불금은 고정직불금 지급요건을 갖추고 물을 가두어 쌀을 생산할 경우 산정기준에 의거 농업인등에게 지급하는 직접지불금임
- ☒ 이행요건이 농지에 물을 가두어 쌀을 생산하는 것으로 관리소홀 등으로 잡초가 무성하여 영농에 실패한 경우라 하더라도 물을 가두어 벼를 재배 하였으면 영농에 실패하였다 하여도 **이행으로 판단**

11 사례	논의 형상은 유지되고 있으나 잡종지로 방치되어 사실상 벼농사가 곤란한 경우 불이행 처리	
유형별	물을 가두어 벼를 재배 했는지 여부	관련 직불금
		변동직접지불금

판단기준

- ☒ 변동직불금은 고정직불금 지급요건을 갖추고 물을 가두어 쌀을 생산할 경우 산정기준에 의거 농업인등에게 지급하는 직접지불금임
- ☒ 이행요건이 농지에 물을 가두어 쌀을 생산하는 것으로 잡종지로 방치되어 사실상 벼농사가 곤란한 경우는 물을 가두는 방법으로 쌀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므로 **불이행으로 판단**

12 사례	산두(밭벼) 재배시 논벼 재배로 인정요구 민원 발생	
유형별	물을 가두어 벼를 재배 했는지 여부	관련 직불금
		변동직접지불금

판단기준

- ☒ 변동직불금은 고정직불금 지급요건을 갖추고 물을 가두어 쌀을 생산할 경우 산정기준에 의거 농업인등에게 지급하는 직접지불금임
- ☒ 이행요건이 농지에 물을 가두어 쌀을 생산하는 것으로 산두(밭벼)는 물을 가두는 방법으로 쌀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므로 **불이행으로 판단**